

제 호

최초등록일 : 년 월 일

① 자동차등록번호		② 차 종	③ 용 도
④ 차 명		⑤ 형식 및 연식 (모델연도)	
⑥ 차 대 번 호		⑦ 원동기형식	
⑧ 사 용 본 거 지			
소유자	⑨ 성명(명칭)	⑩ 주민(법인)등록 번호	
	⑪ 주 소		

※ 유의사항 :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‘원동기형식’은 ‘구동전동기형식’을 말합니다.

이
이
이

등록관청명 직인

1. 제 원			
⑫ 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	
⑬ 길이	mm	⑭ 너비	mm
⑮ 높이	mm	⑮ 총중량	kg
⑰ 배기량	cc	⑰ 정격출력	Ps/rpm
⑰ 승차정원	명	⑳ 최대적재량	kg
㉑ 기통수	기통	㉑ 연료의 종류	(연비 : km/L)
유의사항 :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"정격출력(ps/rpm)"은 "구동전동기 정격출력/회전수(kW/rpm)"를, "기통수/배기량(cc)"은 "구동축전지 정격전압/용량(V/Ah)"을 말하며, "연료소비율(km/ℓ)"은 "연료소비율(km/kWh)"을 말합니다.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"정격출력(ps/rpm)"은 "구동전동기 정격출력/회전수(kW/rpm)"를, "기통수/배기량(cc)"은 "연료전지 최고출력(kW)"을 말하며, "연료소비율(km/ℓ)"은 연료소비율(km/kg)"을 말합니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 는 무관합니다.			
2.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			
㉒ 구분	㉒ 번호판발급일	㉓ 봉인일	㉓ 발급대행자확인
3. 저당권등록사실(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)			
㉔ 구분(설정 또는 말소)			㉔ 일 자

[illegible]

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

- 주소·성명 등의 변경등록(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,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)
 -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·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(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튜닝승인
 -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.
- 이전등록
 -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).
 -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,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 -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말소등록
 - 사유(폐차요청 등)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
 -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.

자동차등록증

○○시·도

5. 변경등록사항

㉓ 성명	㉔ 주소	㉕ 등록일자	㉖ 확인

6. 튜닝사항

㉗ 내용	㉘ 검사일자	㉙ 검사책임자확인

7. 기타

㉚ 내 용	㉛ 일자	㉜ 확인